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업체 부단한 기술개발로 경쟁력 제고 시급

우리측, 외국업체에게 자국업체 우대책 철폐 요구

건설부는 지난 11월 29일 이진설장관 주재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업계간담회를 개최, UR협상의 진전에 따른 건설업의 대외개방과 진출에 대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했다.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본 협회의 회장단 및 시·도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관은 이제까지의 건설분야 UR협상내용과 최근의 협상추이 및 전망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외개방에 대비해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및 업역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분야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일반 및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 및 해외건설업에 대한 조세·금융보험 등 각종 지원제도의 폐지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 주계약자제도의 폐지를, EC는 우리가 제시한 지사설립 허용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공사계약금액의 100%를 계약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Surety Bond 제도를 국제관례대로 5~1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미국국내업체에게 10%마진의 혜택을 주는 자국업체우대정책이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35개 대형공공사를 개방한 것과 관련, 최혜국 우대원칙에 따라 한국에도 적용해주도록 요구했다.

건설부,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중

건설부는 이제까지의 협상결과, 인력이동분야에서 공사관리 필수요원(관리자·기술자 등)은 이동을 자유화하고 기술인력은 양허협상시 국별로 협의키로 했으며 선진국 진출시 입찰·견적·계약시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내국민 우대원칙하에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외공사의 제3국공사 실적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외국업체도 내국업체와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기본협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건설부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아스팔트포장·아파트건설 등 단순시공 분야는 선진국업체와 경쟁력이 있으나 해상구조물·플랜트 등 기술집약형 시공분야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설계분야는 단순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나 대형기술집약형 토목, 건축공사설계는 경쟁력이 뒤지고 있으며 ▲시운전·인도·유지보수 등 건설용역분야는 경쟁력이 있으나 프로젝트 개발·기획·타당성조사 등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시장을 개방할 경우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전수 ▲발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해외수주기회 확대 및 시장다변화 가능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 ▲건설업의 합리적 개편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대형·기술집약형 공사의 외국업체 진출 가능성 ▲외국용역업체가 엔지니어링분야에 진출시 국내업체의 업역축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국내건설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개방에 앞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을 방지하고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외국업체의 시장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외국업체의 참여제한 ▲대형공사에 대해 국내업체와 공동도급에 의하도록 유도 ▲외국업체가 공사수주시 공사중 일정부분 이상을 국내업체에게 하도급 의무화 ▲일정비율이상의 국산 자재사용 의무화 ▲도급한도액 산정시 외국업체에게는 현지법인 자본금 또는 지사의 영업자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할 방침이다.

국내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이전을 위한 국내 건설기술자의 의무적 채용 ▲기술개발투자과 비용에 대한 세액감면·범위확대 ▲정부공사발주시 Turn-Key(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발주 확대 ▲기술개발에 의해 공사비를 절감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을 감하지 않도록하는 기술보상제도의 적극적 시행 ▲P·Q제도 도입검토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을 육성확대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건설분야 UR협상의 경우 농산물 등 타분야와는 달리 오히려 우

리가 선진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개방시에도 설계용역분야를 제외하고는 단순인력의 이동이 자유화되고 있지않은 여건하에서 외국건설업체의 국내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시행해온 많은 차관공사에서 국제입찰을 시행한 결과 한건도 외국업체 응찰사례가 없었던 점과 UR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대부분의 선진국이 개도국에 건설분야 관심은 오직 설계용역 등.건설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국내업체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방식개선 및 업역의 다양화로 실질적인 국제수준화가 이뤄지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세계건설시장은 대외발주액 규모로 연간 1천억달러 정도이나 선진국의 개방정도는 2% 수준에 미치고 있어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선진국시장은 30%이상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건설시장은 2천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므로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태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건설시장 개방계획과 선진국의 요구내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Offer 내용(개방계획)

업종	개방방법	개방시기(안)
• 토목, 건축업	1단계 : 현행유지(합작투자조건) 2단계 : 단독투자, 면허취득허용 (현지법인 형태)	'93까지 '94부터 (지사형태 '96)
• 특수, 전문, 전기, 전기통신, 소방, 설비	1단계 : 현행유지(합작투자조건) 2단계 : 면허취득 (현지법인 형태)	'95까지 '96부터 (지사형태 '98)
• 건축사업	• 국내법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계약 • 국내법인 건축사사무소와 합작투자 • 외국업체의 국내지사 설립	'96부터 '98부터 2000년부터
• 감리전문업	• 단독으로 감리전문업 가능화 (현지법인 형태)	'96부터 (지사형태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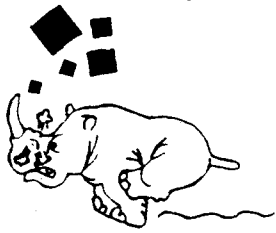
▲각국의 Request 내용 및 대응방안

국명	Request 내용	대응방안
미국	<p>〈내국민대우에 관한 의무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부터 개방될 일반 및 전문건설업의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 ○ 해외건설업에 대한 조세, 금융, 보험 등 각종 지원제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제도는 국내·외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써 내국민우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전 입찰심사제도(P·Q제도) 등과 같은 장치가 발달되지 못한 현단계에서 이 제도는 P·Q제도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음. • 외국의 신규 면허업체의 도급한도액 산정은 처음은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설립후 당해법인 명의로 시공한 공사실적은 차년도 도급한도액 산정시 반영될 것임. • 해외건설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 조감법 제26조에 의거 소득금액의 50/100범위내에서 면제를 받은 경우 상당금액을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불입해야 하며 이것 역시 업체의 임의 선택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혜택부여가 아님. - 금융, 보험등 : 민간 경제주체간의 영업활동이지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음.
일본	<p>〈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다수지분(51%이상)을 소유한 합작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서비스 및 물품(material)의 진출을 할 수 없는 현 제한 조치를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 제도등 외국업체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기술용역 육성법 개정 추진중(과기처 소관).
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이전에 지사설치허용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협정상의 개도국의 점진적 자유화원칙에 따른 계획임을 양허협상시 충분히 설명

廣告


설비 기자재 광고라면

광고효과만점!



月刊

設備工事



문의
461-4167-9